

SAFETY

ISSUE PAPER

TALK

대통령의 경고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없다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음독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최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당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통해 이례적으로 초심 판단을 뒤집고 ‘산업재해’라고 결론을 지었다. 기아 화성공장 하청업체에서 부품공급과 서열 업무를 맡았던 A씨 이야기다.

그는 불법과건을 다루는 소송을 10년 넘게 벌인 끝에 2022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꿈에도 그리던 원청 정규직이 된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원래 업무가 아닌 업무강도가 센 조립부로 전환배치였다. ‘스킬업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2~4주마다 작업반이 변경되는 전례 없는 처우가 이어졌다. 신장이 작은 그에게 손이 닿기 힘든 라인을 배정하고, 적응할 틈도 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휴가를 소진한 후 출근 첫날 회사 주차장에서 제조제를 마셨다. 승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2023년 7월의 일이다.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A씨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같은 현대차그룹 소속인 현대제철 당진공장 B씨의 사연과 놀랍도록 닮았다. B씨(사망 당시 44세)는 2010년부터 13년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연속주조 업무만 해왔다. 소속 협력업체 이름은 바뀌어도 업무는 동일했다. 그러나 2021년 현대제철이 자회사 ‘현대ITC’를 설립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자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불법파견 소송을 벌인 그는 소속 업체의 폐업 이후 냉연공장 몰살으로 강제 배치됐다. 13년간 해온 일과는 180도 다른 업무였다. 2023년 3월 또다시 업체가 바뀌며 크레인 조작 업무로 이동했다.

익숙하지 않은 업무에 투입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B씨는 크레인 조작 실수로 롤 파손 사고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B씨에게는 치명적 트라우마가 됐다. 그는 업무 변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직도 고려했으나 불법파견 소송 중이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병가 휴직으로 월급은 3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다. 그는 복직일을 일주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13년간 쌓아온 숙련을 무시당하고, 낯선 업무로 내몰린 끝의 비극이었다. 그나마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 산재의 또 다른 이름은 불평등

20여 년 가까이 노동전문지 기자로 밥벌이하면서 요즘처럼 ‘산업재해’ 기사가 넘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너무나 닮은 이 두 건의 업무상 재해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2023년에도 산재는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대통령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산재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산재가 줄지 않으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옷을 벗겠다고 했다. 김 장관과 이 대통령이 있는 ‘산재 직보’ 단체채팅방이 24시간 가동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면서 기업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비전과 함께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0.39%에서 0.29%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가시적 목표를 제시하고 단기간에 달성한다면 분명 대단한 성과처럼 비춰질 것이다. 그러나 ‘사망사고 감축’과 같은 숫자에 매몰되면, 현장에서 안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자원을 쏟기보다는 통계 관리에만 집착하게 될 위험이 크다. 자칫 산재 은폐의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다.

● 안전은 권리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모든 기업이 ‘예방’을 외쳤지만, 안전 투자와 노사 간 협력보다 손쉬운 법률방어를 택한 기업이 적지 않았다. 안전을 명분으로 현장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 부정적 조직문화가 양산됐다. 실질적 안전은 빠진 채 서류작업만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 재발률이 44%에 이르는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산업재해는 단순히 안전장비 미착용이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를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지 않는 작업장 문화, 불합리한 고용관계, 일방적 권력 행사가 만든 복합적 결과다.

때문에 산재의 저변에는 늘 불평등이 도사리고 있다. 산재와의 전쟁은 안전모와 안전화 착용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안전은 권리다. 노동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존엄한 일터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재해 예방은 구성원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무엇이 위험한지”를 말할 수 있는 노동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